

## 「2014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시행 공고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14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우수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 부족현상을 완화
- 능력개발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의 역량향상

#### □ 사업 내용

- 사업예산 : 60억원
-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인력)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인력으로 공고차수 신청시작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이며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중 마이스터고·특성화고졸, 전문학사, 학사 등 학사급 이하 인력

- (지원조건) 사업신청기간 중 미취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 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 ○ 지원한도

- (기간 및 인원 수)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
  - \* 1차년도 지원 후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지원” 판정이 날 경우 2차년도 정부 지원금 지원
- (지원 한도) 1인당 인건비 1,080만원, 능력개발비 185만원(학사 기준)
  -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의 55% 지원
- 능력개발비용은 협약기간내에 사용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

- \* 능력개발 비용 종류 : 야간대학(원) 등 상급학교 진학 학비, 학점인정제도에서 인정하는 외부전문교육, 업무관련 전문교육 등 연구개발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에 한함
- \* 교육시작일 및 종료일이 협약기간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정부지원 금액 >

(단위 : 천 원)

구 분	고 졸	전문학사	학 사
기준연봉	17,000	21,000	23,000
정부지원금(1년)	9,350	11,550	12,650
인건비	7,800	9,600	10,800
능력개발비	1,550	1,950	1,85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등,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제외대상

- 채용인력이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각 차수별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병역 대체 복무자 포함)
-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 지원기간 동안 다른 정부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 등이 국가연구 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 등이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채용인력이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채용인력이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2

## 평가 방법

### □ 평가 절차

- 1차 : 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격성 검토
- 2차 :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 □ 평가 항목

- 연구개발 투자율, 기술개발인력 구성비율, 기술개발 인력유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3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 기간

- 2014. 4. 1(화) ~ 6. 30(월)
  - 4월1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경우에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신청 → 과제신청 → 초·중금기술개발인력지원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 □ 신청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 \* 사업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공지 참조
-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 유의사항

- 제외대상 기업 또는 인력이 지원을 받았거나, 사업관리지침에 명시된 각종 이행사항 위배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 **문의처**

## 사업총괄 및 수행기관, 전문기관

담당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35	시행계획 공고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증개센터)	02-3460-9085 02-3460-9084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1661-1357	
	중소기업 R&D 콜센터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청(<http://www.smiba.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파제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koita.or.kr>)
- 이공계인력증개센터(<http://www.rndjob.or.kr>)